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87
----------	-----

2012년 6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2년 6월 26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임 옥 기)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로 인하여 생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별도계정으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자금의 조성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환경개선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과 대상지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 환경개선계정의 존속기간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내인 2016년 12월 31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환경개선계정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17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관리운용의 공통 조항을 정비함.(안 제18조~제20조)

다. 세부내용

- 조례명,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명, 제1조, 제1조의2)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 수도권 매립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추가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주변영향지역, 수도권매립지

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안 제2장, 제2조~제8조)

- 현재 운용중인“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자원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안 제3장, 제9조~제17조)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신설함.(안 제3장)
- 자금의 조성은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1,025억원)과 향후 발생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한도내에서 출연하도록 함.
- “환경개선계정”의 용도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역으로 함.
- 환경개선계정의 관리·운용은“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계정”의 관리·운용 방법과 동일함.
- 환경개선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보칙(안 제4장, 제18조~제20조)

- 제4장 보칙을 신설하고,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의 관리를 위하여 계정별로 회계기관임명,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별도 작성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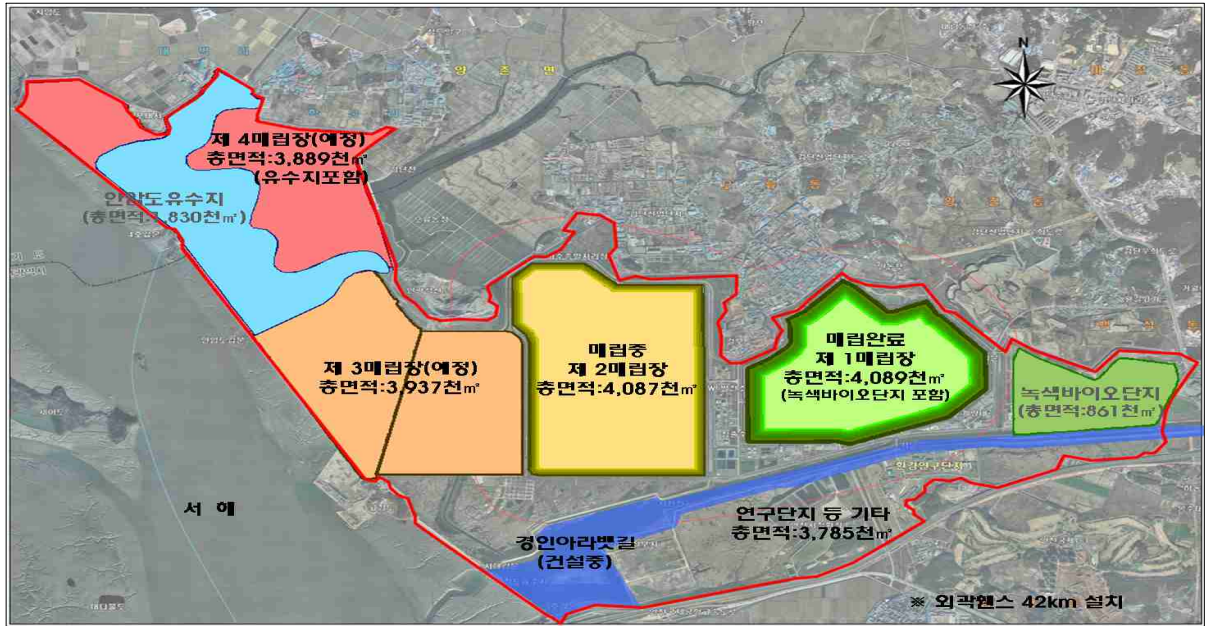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 영 배)

가. 조례안의 제안배경

-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이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기간연장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립지 및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4개의 매립장 중 제1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었고 제2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3, 제4매립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매립지 부지에 여유가 있으나, 매립면허기간이 1992년~2016년까지로 되어 있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에 대한 기간연장이 필요함.

수도권매립지 현황

- 소재지 : 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동, 김포시 양촌면 일대
- 규모 : 총 1,979만㎡(매립용량 228백만톤)
 - 조성비(매입보상비): 523억원(서울시 373억원, 환경부 150억원 분담, 71%:29%)
- 매립기간 : 1992년 ~ 2016년
- 이용지역 : 서울시(25개구), 인천시(9개구·군), 경기도(24개시·군)
- 운영주체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2000.01.21. 공사법 제정)



〈그림 1〉 수도권매립지 평면도

-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7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매립면허에 대한 인허가 권한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어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협조가 필수적임.
- 인천시는 기간연장에 앞서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한 부지제공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적립금 사용 동의,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한 재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인천시가 요청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한 바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투자하기위해 본 조례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개정 방식

- 이번 조례개정안은 별도의 기금조례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조례의 제명변경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을 신설하는 형태의 일부개정조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별도의 기금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본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 방식을 채택한 것은 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 모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에 따라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 그러나 『주민지원계정』은 폐촉법 제21조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금이지만, 신설되는 『환경개선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서울시가 설치하는 것으로 근거가 다른 2개의 계정을 하나의 기금조례로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조례의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협의회나 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상 수정이 필요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라. 『환경개선계정』의 목적

- 수도권매립지는 매립면허가 2016년까지로 되어 있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장소, 막대한 재원소요, 조성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환경개선계정』은 사용기간연장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지만 조례안 제1조에는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

마. 『환경개선계정』의 재원 및 용도

- 환경개선계정의 재원은 수도권매립지의 부지 일부가 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부지로 편입되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1,025억원)과 앞으로 발생하는 부지보상금으로 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중 인천시에서는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2003년), 인천국제공항 철도(2003년), 검단하수종말처리장(2005년) 편입부지 보상금 110억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고 그 대신 앞으로 발생할 부지보상금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음.
- 『환경개선계정』의 대상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역으로, 환경개선계정의 용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지역 및 용도와 중복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계정』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설²⁾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인천시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인천시 관련 공무원이나 주민대표의 참여를 요구한바 있으나 서울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계정의 관리·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지원협의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6. (생략)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용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국토해양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국토해양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⑧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 요지

- 자원회수라는 긍정적인 개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명을 일부 수정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설치목적은 보완하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에 후생복지비를 추가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예산조치 : 서울특별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을 기금으로 출연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및 조직담당관 합의완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 10. 28. ~ 11. 16.) 결과 : 별첨

(2) 규제심사 결과 : 행정규제 아님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87
----------	--------

제안연월일 : 2012년 6월 26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 이유

- 개정안의 조례명 중 폐기물처리관련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므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설치목적은 수정하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함.

2. 주요 골자

- 조례명 및 용어정의 가운데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을 자원회수관련 시설로 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설치목적은 보완함.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항목을 추가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과 제1조의2제1호 중 “폐기물처리관련시설”을 “자원회수관련
시설”로 한다.

안 제1조 중 “안정적 운영을”을 “안정적·장기적 운영을”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을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후생복지비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u> <u>주변영향지역</u> <u>주민지원기금 조례</u> <신설>	<u>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u> <u>관련시설 주변지역</u> <u>지원기금 조례</u> 제1장 총칙	<u>서울특별시 자원회수</u> <u>관련시설 주변지역</u> <u>지원기금 조례</u>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이란 자원회수시설 및 수
도권매립지를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
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매립지”란 인
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
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
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말
한다.

<신설>

제2장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
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2. (생략)
-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
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
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제2조(자금의 조성) ① ----

----- 주민지원계정
(이하 “주민지원계정” -

-----.

- 1.~ 2. (현행과 같음)
- 3. 주민지원계정 -----

제3조(주민지원계정의 용도)
① 주민지원계정-----

1. “자원회수관련시설”
이란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를 말한다.

2. (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같다.

1.~ 2. (생략)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이용료 등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제3조의2(기금 지원대상지역)
① 기금의 지원대상지역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협의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 .

1.~ 2.(현행과 같음)

3. -----

주민지원계정 -----

제3조의2(주민지원계정 지원대상지역) ① 주민지원계정의 -----

----- .

제4조(주민지원계정의 관리·운용) 시장은 주민지원계정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주민지원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주민지원계정 -----

----- 주

1.~ 2. (개정안과 같음)

3. -----
-----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이용료·후생복지비 등-----

주민지원계정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

1. 삭제
2.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
구 소관국장, 소관과장
3.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
구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
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
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
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
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지원계정 -----

-----.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
과 같음)

1.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
구 소관국장, 소관과장
2.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회 위원
3. 총괄기금관리관

제7조(협의회의 기능) ----
----- 각 호-----
-----.

1. 주민지원계정운용계획

2. (현행과 같음)
3. 주민지원계정-----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계정운용계
획 ----- 계정결산-----

제6조(협의회 구성) ① (개정
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기능)(개정
안과 같음)

- 1.(개정안과 같음)
- 2.(개정안과 같음)
- 3.(개정안과 같음)

제8조(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개최한다.

<신설>	----- 제3장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9조(자금의 조성)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 계정”이라 한다)은 경인 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하는 수도권매 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10조(환경개선계정의 용 도) 환경개선계정의 용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 지역 환경개선계정 운 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서 결정하는 환경개선 을 위한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11조(환경개선계정 대상 지역) 환경개선계정의 대 상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 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서 결정하는 지역으로 한 다.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제12조(환경개선계정의 관리·운영) 시장은 환경개선계정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환경개선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채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환경개선계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환경개선계정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개정안과 같음)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총괄기금관리관

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환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위원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 (개정안과 같음)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개정안과 같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보칙</u></p>	
<p><u>제9조</u>(기금의 회계기관) ① <u>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u></p>	<p><u>제18조</u>(기금의 회계기관) ① <u>시장은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정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u></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u>제10조</u>(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u>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u>제19조</u>(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u>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개정안과 같음)</p>
<p><u>제11조</u>(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20조</u>(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자원회수관련시설”이란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를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을 삽입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자금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금”을 “주민지원계정”으로 한다.

-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를 “(주민지원계정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주민지원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을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후생복지비 등”으로 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계정”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기금 지원대상지역)”을 “(주민지원계정 지원대상지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을 “주민지원계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을 “(주민지원계정의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을 각각 “주민지원계정”으로 하며, “별도계정”을 “별도계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운용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주민지원계정”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3. 총괄기금관리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기금”을 각각 “주민지원계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계정운용계획 협의 및 계정결산”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로 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제9조(자금의 조성)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이라 한다)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개선계정의 용도) 환경개선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환경개선계정 대상지역) 환경개선계정의 대상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2조(환경개선계정의 관리·운용) 시장은 환경개선계정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환경개선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환경개선계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환경개선계정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총괄기금관리관
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환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위원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 의 의장이 된다.

②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중전의 제9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

행하기 위하여”를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정별로”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u> <u>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u></p>	<p><u>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u> <u>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자원회수관련시설</u>”이란 <u>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u>를 말한다.</p>

2. “주변영향지역” 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매립지” 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을 말한다.

<신설>

제2장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2. (생략)
-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2. (생략)
-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 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

제2조(자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주민지원계정 -----

제3조(주민지원계정의 용도) ① 주민 지원계정-----.

- 1.~ 2.(현행과 같음)
- 3. -----월 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

시설 이용료 등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제3조의2(기금 지원대상지역) ① 기금의 지원대상지역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협의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

1. 삭제
2.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구 소관

시설 이용료·후생복지비 등 ----- 주민지원
계정 -----

제3조의2(주민지원계정 지원대상지역)
① 주민지원계정의 -----

-----.

제4조(주민지원계정의 관리·운용)
시장은 주민지원계정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주민지원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주민지원계정-----

----- 주민지원계정 -----

-----.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구 소관 국장, 소관과장
2.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국장, 소관과장

3.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구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
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
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신설>

<신설>

<신설>

위원

3. 총괄기금관리관

제7조(협의회의 기능) -----
각 호-----.

1. 주민지원계정 운용계획-----

2. (현행과 같음)
3. 주민지원계정-----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계정운용계획 -----
- 계정결산-----

-----.

제3장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제9조(자금의 조성)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이라 한다)은 경인
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
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개선계정의 용도) 환경

개선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제11조(환경개선계정 대상지역) 환경개선계정의 대상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신설> 제12조(환경개선계정의 관리·운용) 시장은 환경개선계정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환경개선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환경개선계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환경개선계정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
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
장급 공무원 및 총괄기금관리관

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환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위원회사무 담당사무관
이 된다.

<신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신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시장은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정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